

의안번호	제 2012 - 25 호
보 고	2012. 12. 17.
연 월 일	(제45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목차

۱.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 1
2.	처리 현황	12
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28
1.	개요	- 28
	관련 규정	
	의견수렴 계획	
4.	시행 일정	- 33
III.	양형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34
1.	양형위원 개임	- 34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34
IV.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35
	2010	00
V. <i>i</i>	2013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36
VI.	2013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44
1.	목표	-44
2.	교육기간 및 장소	44

3.	교육 과정	44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44
	교육 내용	
VII.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46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46
2.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46

□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및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기 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2. 9. 3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강간살인	0	0	2	2	4
	강도살인	0	0	16	10	26
	강도살인미수	0	0	9	7	16
살	살인	184	336	273	224	1,017
인 범	살인미수	269	434	422	267	1,392
죄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11	6	17
	존속살해	20	23	35	23	101
	존속살해미수	7	17	17	8	49
	전체	480	810	785	547	2,622
	뇌물공여	309	745	557	336	1,947
	뇌물공여교사	0	0	0	2	2
	뇌물수수	168	458	405	343	1,374
뇌	부정처사후수뢰	12	32	17	15	76
물범	수뢰후부정처사	10	40	21	7	78
죄	제3자뇌물교부	14	52	31	8	105
	제3자뇌물취득	4	36	50	20	110
	특가법(뇌물)	57	141	126	101	425
	전체	574	1,504	1,207	832	4,117
	강간	98	195	202	167	662
	강간살인	2	2	1	0	5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강간상해	91	189	174	120	574
	강간치사	0	2	0	1	3
	강간치상	198	342	275	206	1,021
	강도강간	20	17	11	12	60
	강제추행	427	951	1,225	1,127	3,730
	강제추행상해	17	37	46	24	124
	강제추행치상	75	134	110	87	406
	미성년자간음	0	0	0	1	1
	미성년자의제강간	8	22	13	20	6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3	4	0	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4	28	23	4	7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2	0	2
성	상습강제추행	0	0	1	4	5
범	상습준강제추행	0	0	1	1	2
죄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59	275	72	30	636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5	5	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73	72	9	3	157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06	70	4	7	187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66	63	31	11	17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6	14	6	3	39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87	116	36	10	34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46	49	14	7	11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5	60	34	3	14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	10	1	1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7	17	10	4	3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206	184	50	21	461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31	89	37	27	284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23	18	4	0	4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49	63	9	3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260	370	132	76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135	13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0	0	9	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0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83	132	110	32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92	165	81	33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37	3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31	3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64	137	72	27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0	0	0	12	1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0	0	0	10	10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12	13	20	4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90	264	183	63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33	70	55	15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37	71	58	16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11	5	1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5	9	19	3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185	357	175	71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72	123	40	23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16	50	38	104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51	139	72	26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1	8	4	1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785	1,077	597	2,45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138	1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0	0	0	19	1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0	0	0	16	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0	0	0	7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0	0	0	8	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29	29
	준강간	38	111	93	76	318
	준강간치상	4	14	15	9	42
	준강제추행	75	165	170	148	558
	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
	준강제추행치상	3	1	7	1	1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05	89	0	0	394
	특가법(강도강간)	0	0	1	0	1
	피호보자간음	0	0	0	1	1
	전체	2,609	5,295	5,689	4,266	17,859
	강도	103	154	140	100	497
	강도교사	0	0	0	2	2
71	강도살인	21	36	10	0	67
강 도	강도상해	484	690	577	454	2,205
범	강도상해교사	0	0	0	1	1
죄	강도치사	1	8	5	5	19
	강도치상	32	47	53	28	160
	준강도	57	90	97	35	279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준특수강도	7	16	10	10	43
	특가법(강도)	8	12	10	2	3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	9	13	10	38
	특강법(특수강도)	2	0	0	0	2
	특수강도	322	554	605	308	1,789
	전체	1,043	1,616	1,520	955	5,134
	배임	376	582	437	294	1,689
횡	업무상배임	281	650	574	375	1,880
령 ·	업무상횡령	1,520	2,784	2,376	1,510	8,190
배	특경가법(배임)	150	333	410	179	1,072
임 범	특경가법(횡령)	195	513	522	199	1,429
죄	횡령	1,434	2,574	2,095	1,261	7,364
	전체	3,956	7,436	6,414	3,818	21,624
	모해위증	12	18	13	19	62
위	모해위증교사	0	0	0	1	1
증 범	위증	862	1,408	1,098	781	4,149
죄	위증교사	50	229	173	96	548
	전체	924	1,655	1,284	897	4,760
	무고	1,143	2,081	1,851	1,043	6,118
무	무고교사	0	0	0	9	9
고	특가법(무고)	6	7	6	4	23
범 죄	특가법(무고)교사	0	0	0	1	1
	전체	1,149	2,088	1,857	1,057	6,151
	총계	10,735	20,404	18,756	12,372	62,267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2. 9. 30.)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간음약취	0	1	1
	미성년자약취	8	10	18
약	미성년자유인	4	10	14
취 ·	영리약취	0	1	1
유	영리유인	1	0	1
인 범	추행유인	1	0	1
죄	특가법(약취.유인)	5	11	16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24	25	49
	전체	43	58	101
	사기	17,599	24,151	41,750
	상습사기	75	100	175
사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1	1	2
기 범	준사기	15	8	23
죄	컴퓨터등사용사기	127	234	361
	특경가법(사기)	526	492	1,018
	전체	18,343	24,986	43,329
	문화재보호법위반	15	19	34
	산림보호법위반	29	35	6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09	161	270
T-J	상습절도	1	1	2
절 도	상습특수절도	0	2	2
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95	419	714
죄	야간방실침입절도	35	45	80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254	259	513
	절도	3,344	4,846	8,190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절도교사	0	13	13
	특가법(산림)	41	14	55
	특가법(절도)	1,120	1,497	2,617
	특수절도	1,811	2,450	4,261
	특수절도교사	0	1	1
	전체	7,056	9,762	16,818
	공문서변조	36	85	121
	공문서변조교사	0	1	1
	공문서부정행사	177	409	586
	공문서부정행사교사	0	1	1
	공문서위조	157	273	4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70	404	674
	공전자기록등위작	6	14	20
공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9	157	226
문	면허증불실기재	0	10	10
서 범	변조공문서행사	10	2	12
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0	3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	1	21
	불실기재여권행사	0	4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29	14	43
	허위공문서작성	29	26	55
	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0	8
	전체	847	1,401	2,248
	변조사문서행사	25	92	117
	사문서변조	41	24	65
	사문서부정행사	3	4	7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사문서위조	697	1,071	1,768
	사문서위조교사	0	2	2
	사전자기록등변작	4	4	8
	사전자기록등위작	17	15	32
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	0	2
문	위조사문서행사	142	33	175
서 범	위조사서명행사	0	58	58
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5	41	66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0	7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3	5
	허위진단서작성	8	5	13
	전체	973	1,352	2,325
	공무집행방해	2,930	4,089	7,019
	공무집행방해교사	0	1	1
	공용건조물파괴	0	2	2
	공용물건무효	1	2	3
공	공용물건손상	336	469	805
무	공용물건은닉	1	1	2
집 행	공용서류무효	4	8	12
방	공용서류손상	31	44	75
해 범	공용서류은닉	2	2	4
죄	위계공무집행방해	123	219	342
	특수공무집행방해	138	256	3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07	98	205
	특수공용물건손상	6	7	13
	전체	3,679	5,198	8,87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8	85	123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6	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69	398	6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39	182	3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	0	4
식 -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2	3
품	식품위생법위반	788	905	1,693
보	약사법위반	161	248	409
건 범	의료법위반	520	489	1,009
죄	의료법위반교사	0	1	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1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35	47	82
	화장품법위반	9	16	25
	전체	1,976	2,380	4,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75	484	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31	27	58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665	2,297	3,962
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8	316	524
범 죄	특가법(마약)	0	1	1
	특가법(향정)	5	7	12
	전체	2,184	3,132	5,316
	총계	35,101	48,269	83,370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2. 9. 30.)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9월	전체
	배임수재	95	95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9월	전체
	배임증재	49	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90	90
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37	37
권 ·	증권거래법위반	9	9
금	특가법(알선수재)	36	36
융 범	특경가법(수재등)	7	7
죄	특경가법(알선수재)	30	30
	특경가법(증재등)	6	6
	전체	359	359
	디자인보호법위반	9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62	62
지 식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7	7
재	상표법위반	238	238
산 '''	실용신안법위반	1	1
범 죄	저작권법위반	195	195
	특허법위반	6	6
	전체	518	518
	상습폭행	1	1
	상해	4,242	4,242
	상해치사	33	33
 폭	존속상해	30	30
<u>축</u> 력	존속중상해	1	1
범	존속폭행	7	7
죄	존속폭행치상	1	1
	존속협박	6	6
	중상해	13	13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75	175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9월	전체
	특수존속협박	1	1
	특수폭행	11	11
	특수폭행치사	1	1
	특수협박	24	24
	폭처법(공동상해)	1,194	1,194
	폭처법(공동상해)교사	1	1
	폭처법(공동폭행)	247	247
	폭처법(공동협박)	21	2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3	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5	5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2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	1	1
	폭처법(상습상해)	28	28
	폭처법(상습존속폭행)	4	4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상해)	1	1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협박)	1	1
	폭처법(상습폭행)	23	23
	폭처법(상습협박)	6	6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1,354	1,354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교사	3	3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상해)	6	6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폭행)	1	1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협박)	5	5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	292	292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383	383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9월	전체
	폭행	1,422	1,422
	폭행치사	14	14
	폭행치상	47	47
	협박	194	194
	협박교사	1	1
	전체	9,811	9,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827	2,827
교 통	특가법(도주차량)	1,419	1,419
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931	931
죄	전체	5,177	5,177
선거	공직선거법위반	322	322
범죄	전체	322	322
	총계	16,187	16,187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 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및 제3기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2. 9. 30.까지 양형 기준 대상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제1심 법원 처리 현 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2. 9. 30.)

+1717171	범죄군			사건 구분			
처리기간	무지도		고합	고단	고정	전체	
	ALOUHTI	수	286	0	0	286	
	살인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수	46	73	1	120	
	뇌물범죄	비율	38.3%	60.8%	0.8%	100.0%	
	서버지	수	960	96	60	1,116	
	성범죄	비율	86.0%	8.6%	5.4%	100.0%	
	71 F HJ T1	수	563	1	0	564	
2009년	강도범죄	비율	99.8%	0.2%	0.0%	100.0%	
하반기	취거 베이버기	수	101	990	286	1,377	
	횡령·배임범죄	비율	7.3%	71.9%	20.8%	100.0%	
	위증범죄	수	6	310	41	357	
		비율	1.7%	86.8%	11.5%	100.0%	
	무고범죄	수	6	252	92	350	
		비율	1.7%	72.0%	26.3%	100.0%	
	지 +II	수	1,968	1,722	480	4,170	
	전체	비율	47.2%	41.3%	11.5%	100.0%	
	ALOIH TI	수	736	0	0	736	
	살인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수	548	512	15	1,075	
201014	뇌물범죄	비율	51.0%	47.6%	1.4%	100.0%	
2010년	서버기	수	3,294	366	269	3,929	
	성범죄	비율	83.8%	9.3%	6.8%	100.0%	
	가 ㄷ 뭐 지	수	1,421	2	0	1,423	
	강도범죄	비율	99.9%	0.1%	0.0%	100.0%	

+1-1-1-1	W 71 7			사건 구분		7140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17 III OLU T	수	719	4,437	1,097	6,253
	횡령·배임범죄	비율	11.5%	71.0%	17.5%	100.0%
		수	41	1,272	192	1,505
	위증범죄	비율	2.7%	84.5%	12.8%	100.0%
		수	45	1,311	339	1,695
	무고범죄	비율	2.7%	77.3%	20.0%	100.0%
	TJ+11	수	6,804	7,900	1,912	16,616
	전체	비율	40.9%	47.5%	11.5%	100.0%
	1101HI TI	수	767	0	0	767
	살인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652	261	18	931
		비율	70.0%	28.0%	1.9%	100.0%
	성범죄	수	3,558	403	299	4,260
		비율	83.5%	9.5%	7.0%	100.0%
	강도범죄	수	1,354	0	0	1,354
201114		비율	100.0%	0.0%	0.0%	100.0%
2011년	취거 베이버기	수	1,060	4,183	984	6,227
	횡령·배임범죄	비율	17.0%	67.2%	15.8%	100.0%
	이즈비되	수	20	1,064	233	1,317
	위증범죄	비율	1.5%	80.8%	17.7%	100.0%
		수	89	1,287	360	1,736
	무고범죄	비율	5.1%	74.1%	20.7%	100.0%
	저+!!	수	7,500	7,198	1,894	16,592
	전체	비율	45.2%	43.4%	11.4%	100.0%
	사이버지	수	508	1	0	509
	살인범죄	비율	99.8%	0.2%	0.0%	100.0%
	뇌물범죄	수	477	250	12	739

+1 =1 =1 =1	버지그			사건 구분		T-1+11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비율	64.5%	33.8%	1.6%	100.0%
	서버지	수	2,829	624	454	3,907
	성범죄	비율	72.4%	16.0%	11.6%	100.0%
	ᄁᄔᆮᄔᅼᅚ	수	985	6	0	991
	강도범죄	비율	99.4%	0.6%	0.0%	100.0%
2012년	횡령·배임범죄	수	776	2,465	837	4,078
		비율	19.0%	60.4%	20.5%	100.0%
1월~9월	위증범죄	수	20	642	216	878
		비율	2.3%	73.1%	24.6%	100.0%
		수	24	738	264	1,026
	무고범죄	비율	2.3%	71.9%	25.7%	100.0%
	저비	수	5,619	4,726	1,783	12,128
	전체	비율	46.3%	39.0%	14.7%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2. 9. 30.)

+1 =1 =1 =1	HIZIT			사건 구분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야치 오이버지	수	9	1	0	10		
	약취·유인범죄	비율	90.0%	10.0%	0.0%	100.0%		
	니키버지	수	334	4,501	1,686	6,521		
	사기범죄	비율	5.1%	69.0%	25.9%	100.0%		
2011년	74 14 1	수	371	2,685	581	3,637		
하반기	절도범죄	비율	10.2%	73.8%	16.0%	100.0%		
	공문서범죄	수	18	166	101	285		
		비율	6.3%	58.2%	35.4%	100.0%		
	사문서범죄	수	15	276	117	408		

+1717171	штіп			사건 구분		TJ+11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비율	3.7%	67.6%	28.7%	100.0%
	고ㅁ푀휀바베田푀	수	93	1,151	694	1,938
	- 공무집행방해범죄 -	비율	4.8%	59.4%	35.8%	100.0%
		수	17	172	628	817
	식품·보건범죄	비율	2.1%	21.1%	76.9%	100.0%
	미아버지	수	125	1,099	33	1,257
	마약범죄	비율	9.9%	87.4%	2.6%	100.0%
	T.I + II	수	982	10,051	3,840	14,873
	전체	비율	6.6%	67.6%	25.8%	100.0%
	01+1 0 01+1-1	수	62	17	0	79
	약취·유인범죄	비율	78.5%	21.5%	0.0%	100.0%
	사기범죄	수	1,250	15,210	5,593	22,053
		비율	5.7%	69.0%	25.4%	100.0%
	절도범죄	수	964	6,900	1,830	9,694
		비율	9.9%	71.2%	18.9%	100.0%
	701141	수	125	594	325	1,044
	공문서범죄	비율	12.0%	56.9%	31.1%	100.0%
2012년		수	73	731	455	1,259
1월~9월	사문서범죄	비율	5.8%	58.1%	36.1%	100.0%
	고디지센티센터	수	294	2,103	2,062	4,459
	공무집행방해범죄	비율	6.6%	47.2%	46.2%	100.0%
	시표 나기버리	수	39	518	1,646	2,203
	식품·보건범죄	비율	1.8%	23.5%	74.7%	100.0%
	DI OFFII =1	수	399	2,350	45	2,794
	마약범죄	비율	14.3%	84.1%	1.6%	100.0%
	TJ+"	수	3,206	28,423	11,956	43,585
	전체	비율	7.4%	65.2%	27.4%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2. 9. 30.)

+1717171	нт			사건 구분		TJ+II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ᄌᄀᄀᄋᄡᅱ	수	2	7	4	13
	증권·금융범죄	비율	15.4%	53.8%	30.8%	100.0%
	TI시케티벤컨	수	1	66	106	173
	지식재산범죄	비율	0.6%	38.2%	61.3%	100.0%
	폭력범죄	수	118	1,126	1,564	2,808
2012년		비율	4.2%	40.1%	55.7%	100.0%
7월~9월	교통범죄	수	260	878	677	1,815
		비율	14.3%	48.4%	37.3%	100.0%
	니기비기	수	1	11	0	12
	선거범죄	비율	8.3%	91.7%	0.0%	100.0%
	지+II	수	382	2,088	2,351	4,821
	전체	비율	7.9%	43.3%	48.8%	100.0%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2. 9. 3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강간살인	0	0	0	1	1
	강도살인	0	0	8	10	18
살	강도살인미수	0	0	11	5	16
인	살인	105	315	270	199	889
범 죄	살인미수	170	382	435	245	1,232
1	살인미수교사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6	3	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0	0	0	1	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존속살해	7	26	26	25	84
	존속살해미수	4	13	11	16	44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	0	0	0	2	2
	전체	286	736	767	509	2,298
	뇌물공여	59	558	447	300	1,364
	뇌물공여교사	0	0	0	1월~9월 25 16 2 509 300 1 287 4 6 12 23 106 739 137 - 115 1 164 13 947 27 76 15 3 7 -	1
	뇌물수수	46	280	282	287	895
뇌	부정처사후수뢰	2	26	18	4	50
물 범	수뢰후부정처사	2	27	20	6	55
죄	제3자뇌물교부	3	50	20	12	85
	제3자뇌물취득	4	32	31	23	90
	특가법(뇌물)	4	102	113	106	325
	전체	120	1,075	931	739	2,865
	강간	38	128	127	739 137	430
	강간살인	1	0	2	-	3
	강간상해	49	175	181	115	520
	강간치사	0	2	0	1	3
	강간치상	104	313	256	164	837
	강도강간	4	24	10	13	51
성	강제추행	127	548	655	947	2,277
범 죄	강제추행상해	11	39	47	27	124
'	강제추행치상	40	115	112	76	343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12	15	4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1	3	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16	7	5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	1
	상습강제추행	0	0	0	1	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92	35	553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1	-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4	5	142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5	1	146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0	0	1	-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30	12	15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4	6	39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31	13	32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17	8	10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26	12	13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4	2	1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10	2	26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45	27	328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38	26	256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3	-	3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12	3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307	208	66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64	6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110	84	23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105	85	249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0	0	1	-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16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13	13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109	86	22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14	15	3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246	149	53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0	0	2	-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55	50	12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67	44	13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7	8	1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13	14	3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228	189	47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112	72	22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30	34	7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62	71	15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1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866	755	2,04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51	5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	-	-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	-	-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15	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0	0	0	1	1
	준강간	7	56	49	71	183
	준강간치상	2	10	10	10	32
	준강제추행	32	104	92	132	360
	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
	준강제추행치사	0	0	1	-	1
	준강제추행치상	1	3	4	5	13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	-	-	1	1
	청소년성보호법	1	0	0	-	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4	-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5	-	185
	전체	1,116	3,929	4,260	3,907	13,212
	강도	66	159	136	98	459
	강도살인	10	33	20	-	63
	강도상해	238	570	548	354	1,710
	강도치사	1	4	9	4	18
71	강도치상	15	54	45	24	138
강 도	준강도	43	92	94	40	269
범	준특수강도	8	14	9	10	41
죄	특가법(강도)	4	12	10	10	3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15	9	35
	특강법(특수강도)	0	1	0	-	1
	특수강도	177	475	468	442	1,562
	전체	564	1,423	1,354	991	4,332
	배임	111	513	464	296	1,384
횡	업무상배임	71	439	484	331	1,325
령 ·	업무상횡령	602	2,484	2,356	1,522	6,964
배	특경가법(배임)	27	190	254	278	749
임 범	특경가법(횡령)	33	334	492	361	1,220
죄	횡령	533	2,293	2,177	1,290	6,293
	전체	1,377	6,253	6,227	4,078	17,935
OI.	모해위증	3	14	18	12	47
위 증	위증	296	1,260	1,098	766	3,420
범	위증교사	58	231	201	100	590
죄	전체	357	1,505	1,317	878	4,057
무 고	무고	349	1,687	1,729	1,018	4,783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1월~9월	전체
	무고교사	0	0	0	2	2
범 죄	특가법(무고)	1	8	7	6	22
	전체	350	1,695	1,736	1,026	4,807
	총 계	4,170	16,616	16,592	12,128	49,506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2. 9. 30.)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간음약취	0	1	1
Ot	미성년자약취	0	13	13
약 취	미성년자유인	2	10	12
	영리약취	0	1	1
유 인	영리유인	0	1	1
범	특가법(약취·유인)	2	6	8
죄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6	47	53
	전체	10	79	89
	사기	6,284	21,102	27,386
	상습사기	36	90	126
사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	2	2
기 범	준사기	4	16	20
죄	컴퓨터등사용사기	74	283	357
	특경가법(사기)	123	560	683
	전체	6,521	22,053	28,574
	문화재보호법위반	4	14	18
절	산림보호법위반	6	32	38
도 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8	129	157
죄	상습절도	9	7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43	375	518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야간방실침입절도	17	43	60
	야간선박침입절도	0	1	1
	야간주거침입절도	128	282	410
	절도	1,742	4,505	6,247
	절도교사	0	9	9
	특가법(산림)	10	15	25
	특가법(상습절도)	0	2	2
	특가법(절도)	689	1,629	2,318
	특수절도	861	2,650	3,511
	특수절도교사	0	1	1
	전체	3,637	9,694	13,331
	공기호부정사용	0	2	2
	공문서변조	16	57	73
	공문서부정행사	56	218	274
	공문서부정행사교사	0	1	1
	공문서위조	63	194	257
	공문서위조교사	0	1	1
공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0	391	491
문	공전자기록등위작	3	3	6
서 <u></u> 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2	109	131
죄	면허증불실기재	0	7	7
	변조공문서행사	2	2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3	3
	불실기재여권행사	0	1	1
	여권불실기재	0	1	1
	위조공문서행사	5	22	27
	허위공문서작성	18	31	49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허위공문서행사	0	1	1
	전체	285	1,044	1,329
	변조사문서행사	1	4	5
	사문서변조	12	68	80
	사문서부정행사	3	2	5
	사문서위조	351	1,093	1,444
	사문서위조교사	0	1	1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 문	사전자기록등변작	0	5	5
서	사전자기록등위변작	0	2	2
범 죄	사전자기록등위작	12	9	21
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5	34	49
	위조사서명행사	0	2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8	37	45
	허위진단서작성	4	2	6
	전체	408	1,259	1,667
	공무집행방해	1,530	3,400	4,930
	공용건조물파괴	2	0	2
공	공용물건무효	1	1	2
무	공용물건손상	201	484	685
집 행	공용물건은닉	1	0	1
방	공용서류무효	2	5	7
해 범	공용서류손상	16	43	59
죄	공용서류은닉	3	1	4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1	1
	위계공무집행방해	36	191	227

범죄	세부죄명	2011년 하반기	2012년 1월~9월	전체
	특수공무방해치상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	88	211	2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53	110	163
	특수공용건조물파괴	0	1	1
	특수공용물건손상	5	10	15
	전체	1,938	4,459	6,39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5	50	6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3	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71	385	5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80	179	259
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0	1	1
품 ·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1	1
보	식품위생법위반	277	848	1,125
건 범	약사법위반	77	207	284
죄	의료법위반	171	453	624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2	2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0	53	63
	화장품법위반	8	21	29
	전체	817	2,203	3,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62	319	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3	23	46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940	2,157	3,097
약 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32	287	419
죄	특가법(마약)	0	1	1
	특가법(향정)	0	7	7
	전체	1,257	2,794	4,051
	총 계	14,873	43,585	58,458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2. 9. 30.)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9월	전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	4
ᄌ긔	증권거래법위반	1	1
증권	특경가법(수재등)	1	1
금융	특경가법(알선수재)	6	6
범죄	특경가법(증재등)	1	1
	전체	13	13
지	디자인보호법위반	1	1
식	상표법위반	104	104
재 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	2
범	저작권법위반	66	66
죄	전체	173	173
	상해	1,222	1,222
	상해치사	5	5
	존속상해	10	10
	존속중상해	1	1
	존속협박	1	1
	중상해	2	2
폭	집단흉기등폭행	1	1
력 범	특가법(보복범죄등)	12	12
죄	특가법(운전자폭행등)	64	64
	특수존속협박	1	1
	특수폭행	4	4
	특수협박	9	9
	폭처벌(흉기등협박)	4	4
	폭처법(공동상해)	358	358
	폭처법(공동폭행)	72	72

범죄	세부죄명	2012년 7월~9월	전체
	폭처법(공동협박)	2	2
	폭처법(상습상해)	14	14
	폭처법(상습존속폭행)	3	3
	폭처법(상습폭행)	9	9
	폭처법(상습협박)	4	4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325	325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상해)	3	3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협박)	2	2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	48	48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98	98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6	6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	2	2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1	1
	폭처법(흉기등상해)	11	11
	폭처법(흉기등협박)	4	4
	폭행	438	438
	폭행치사	3	3
	폭행치상	7	7
	협박	62	62
	전체	2,808	2,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025	1,025
교 통	특가법(도주차량)	430	430
범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360	360
죄	전체	1,815	1,815
선거	공직선거법위반	12	12
범죄	전체	12	12
	총 계	4,821	4,821

Ⅱ.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 · 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 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 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u>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u>
 <u>의견을 조회</u>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45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8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될 예정

인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나. 조세범죄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u> </u>				비고
1	입	법	부	국							ত্র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국			세				청	징세법무국장
7				기	획		재		정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8				법			무				부	검찰국장
9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10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11	헌		법		지	}		판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ਠੁੱ	}	회	총무이사
13				한	국	법	제	연		7	원	비교법제연구실장
14				한	국	법	학	亚		수 수	회	사무총장
15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6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7				한	국	세		무	ਨੁੱ	ţ	회	총무
18				한	국	세		법	ō	}	ত্রী	총무이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9		한 국 조 세 연 구 원	경영지원실장
20		한국조세연구포럼	사무국장
21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23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4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5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6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9		한 국 세 무 사 회	사무처장
30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시민단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정치입법팀
32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33		한국 ҮМСА 전국연맹	사무총장
34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다. 공갈범죄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ই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9	연구기관	대 한 범 죄 학 회	총무이사
10		한 국 법 제 연 구 원	비교법제연구실장
11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2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3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4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5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6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7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18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19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2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단체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4		한 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25		한 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라. 방화범죄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법 원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소	빙	ŀ	방		재		청	기획조정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헌		법	개 개			판 소				소	행정관리국장
11	연구	^ユ 기	관	대	한	범		죄	ζ	학	회	총무이사
12				한	국	법	제	연		구	원	비교법제연구실장
13				한	국	법	학	亚		수	ত্র	사무총장
14				한	국	<u>.</u>	법		학		원	총무이사
15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법		학	ত্র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8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9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0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민단체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6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27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2. 12. 18. ~ 2013. 1. 11.

○ 의견조회 취합 : 2013. 1. 11.

※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 제46차 회의 시 보고 예정

Ⅲ. 양형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양형위원 개임

- 2012. 12. 6.자로 김진태 위원 사임
- 2012. 12. 17.자로 채동욱 위원(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위촉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2. 12. 17.(월) 15:30

○ 장 소 : 대법원 본관 11층 소접견실

○ 참석범위: 대법원장, 위원장, 비서실장, 상임위원

○ 위촉대상자 : 채동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약력은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Ⅳ.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 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소위원회 회의	제23차	2012.12.	10.	12:00	조세,심의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VI.			S	<u></u> 건	
	제61차	2012.11. 12	2. 16:00		조세, 검토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62차	2012.11. 26	6. 16:00		조세, 검토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제63차	2012. 12. 3	3. 16:00	0 2	조세, 병	방화범죄	의 양형기준	·안 검토

V. 2013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 기획운영과

순 번	구 분	내 용
1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13-기획-1)	 ○ 추진방향 - 제3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일부(조세, 공갈,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후 제4기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 선정 및 양형기준 마련 - 제1기 양형기준(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제2기 양형기준(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및 제3기 양형기준(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수정·보완 검토 - 제1, 2, 3기 양형기준 운영점검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 개선사항 검토 ○ 구체적 방안 - 전문위원단의 양형기준 초안 작성 - 양형기준안 의결 - 공청회・공개토론회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양형기준 공개 및 시행
2	4기 양형위원회 출범 지원 (13-기획-2)	 ○ 제4기 양형위원회 구성 - 2013. 4. 26. 제3기 양형위원회 임기 만료 및 2013. 4. 27.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예정 - 위원장, 위원 12인 임명·위촉

순 번	구 분	내 용
		 ○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 선정 - 전체회의 일정 수립 및 예상 회의 의안 정리 -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및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수립·보고
3	전문위원 업무지원 (13-기획-3)	 ○ 전문위원단 구성 - 전문위원 임기 만료・사임 등에 따라 수시로 연임 위촉 또는 신규 위촉 - 전문위원 연구 활동의 전문성・연속성・효율성・객관성을 고려 하여 조직 정비 ○ 전문위원단 활동 계획 -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2013년도 연구계획 확정 및 위원회 의결 - 전문위원을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과제 분장 - 위원회에서 선정한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 초안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 및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
4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13-기획-4)	 ○ 취지 - 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구현 -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 ○ 구체적 내용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공개토론회 개최 -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 이행 - 양형위원회 주최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검토

순번	구 분	내 용
		- 현행 양형기준 시행 이후 일반인 및 전문가의 양형에 대한 인 식변화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등을 통한 여론수렴
5	양형기준 공개 (13-기획-5)	 ○취지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형기준 공개는 필수적 절차임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책자 등을 통하여 양형기 준을 공개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홍보효과 기대 ○ 구체적 내용 - 양형기준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 - 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함께 게시 - 양형기준 책자 발간하여 법원・국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 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부 - 영문판 양형기준 책자 발간 및 관계기관 배부
6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 (13-기획-6)	 ○ 추진방향 -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 구체적 방안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 - 2012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정리 및 2013년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 - 연간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연간보고서 국회 보고 및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 관계기관 배부

순번	구 분	내 용
7	자문위원 회의 개최 (13-기획-7)	 ↑ 취지 -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 반영 -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구체적 내용 - 임기 만료・사임 등에 따른 자문위원 연임 위촉 또는 신규 위촉 - 2013년 회의 개최 계획 수립 - 양형기준안에 관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과정에 반영
8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13-기획-8)	 ○취지 -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경험 공유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의 대외 홍보 ○ 구체적 방안 - 미국, 유럽 등 각국의 양형위원회와 사법기관 방문하여 양형실무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경험 공유 - 외국 양형위원회 위원장・위원 초빙 심포지엄, 토론회, 간담회등 개최 검토 -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관한 국외 홍보 - 영문판 양형기준 책자 발간 및 배부를 통한 양형기준 국외 홍보
9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홍보 (13-기획-9)	 ○취지 - 양형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내역 및 양형기준제도의 내용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 양형기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순번	구 분	내 용
		○ 구체적 방안 - 양형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회 보고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지속적인 관리 - 인쇄물, 라디오 방송, 신문, 지하철,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한 양형위원회 홍보 검토 - 양형기준 책자 발간 및 관계기관 배포
10	양형위원회 각종 자료집 발간 (13-기획-10)	 ○ 추진방향 - 양형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자문위원・운영지원단의 회의,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 및 발간 ○ 구체적 방안 - 양형위원회・전문위원・자문위원 등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집 발간・등록

▶ 자료조사과

순 번	구 분	내 용
1	양형자료조사 (13-자료-1)	 ○ 추진방향 - 제4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제1, 2, 3기 양형기준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구체적 방안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또는 설정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 필요에 따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예상범죄를 중심으로 미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 양형자료조사 실시 -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점검

순 번	구 분	내 용
2	양형조사표 개선 (13-자료-2)	 ○ 추진방향 - 양형조사표의 수정, 개선을 통한 양형자료조사의 신뢰도 제고 ○ 구체적 방안 - 양형자료분석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조사표를 수정・보완 - 수정·보완된 양형자료조사표를 신양형정보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양형인자의 체계적 사후 관리체제 구축
3	양형자료 분석관 교육 (13-자료-3)	 ○ 추진방향 - 2013. 1. 신규 전입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교육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 ○ 구체적 방안 - 양형위원회의 현황 및 양형자료분석관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교육 - 양형인자의 확인과 평가 등 양형실무 이론 교육 - 범죄유형별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실습 -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 증진
4	양형자료분석관 업무 개선 (13-자료-4)	 ○ 추진방향 - 양형자료분석관 제도의 운영 개선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 통일 방안 모색 ○ 구체적 방안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편람 수정 및 보완 - 전국 양형자료분석관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양형자료분석관의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 연 4회 토론회 및 연 1회 워크숍 개최
5	양형기준 운영 점검 (13-자료-5)	○ 추진방향 - 양형기준 시행 이후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 확인 ○ 구체적 방안

순 번	구 분	내 용
		- 운영지원단 및 각급 법원 양형자료분석관 등을 통한 효율적 양형 기준 운영점검 체계 구축
		- 제1, 2, 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사건의 전수조사를 통한 운 영점검 실시
		-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정기적 보고 및 책자 발간

▶ 통계분석과

순 번	구 분	내 용
1	양형자료 통계분석 (13 - 통계-1)	 ○ 추진방향 -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에 대한 통계분석 -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사건리스트 및 표본 추출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통계분석 ○ 구체적 방안 - 제1, 2, 3기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 - 제4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의 양형조사에 대한 통계분석 - 조사대상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확정사건 양형 통계분석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양형기준 설정대상 사건의 모집단 및 표본추출 -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직회귀분석 등)
2	전문위원 지원 (13-통계-2)	○ 추진방향-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지원을 통해 전 문위원의 연구 활동 지원○ 구체적 방안

순 번	구 분	내용
		 조사된 양형자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형 통계자료 제공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추가도입을 통한 전문위원 양형기준 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업무지원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및 기타 통계자료 제공 전문위원 양형기준 연구에 필요한 사건리스트 및 판결문 제공
3	양형기준 운영점검 통계분석 (13-통계-3)	 ○ 추진방향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운영점검에 대한 통계분석 ○ 구체적 방안 - 제1, 2, 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해당 사건에 대한 운영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자료제공 -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사건에 대한 리스트 추출 및 판결문 보존작업 -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상관분석,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직회귀분석 등)
4	양형자료 분석업무 개선 (13-통계-4)	 ○ 추진방향 -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양형자료의 효율적 추출 및 통계 제공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의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및 모집단의 표본추출에 대한 양형통계분석 실무편람 마련 ○ 구체적 방안 - 분석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양형자료의 신속한 취합 및 추출을 통해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수집 - 분석업무시스템에 포함된 양형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통계분석을 적시 처리 - 양형기준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통계관련 내용에 대한 실무편 람 마련

VI. 2013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1. 목표

-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
- 신규 전입 분석관을 대상으로 기존 분석관이 1:1로 교육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을 증진함
- 분석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2.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교육기간

○ 2013. 1. 15.(화) ~ 1. 17.(목) 2박 3일간

나.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실 및 전산실

3. 교육 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 : 전입 자료조사과장 및 양형자료분석관, 전입 통계분석

과장 및 실무관

○ 교육 지원자 : 양형자료분석관 8명

○ 교육 강사 : 운영지원단장 외 7명

5. 교육 내용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설명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실습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2. 10. 11.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 요청		
2	2012. 10. 27.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 개진		

○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으로 회신

2.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 정보공개 청구

순번	접수일자	공개청구 요지	
1	2012. 12. 7	○ 폭력범죄 양형기준	

○ 회신 결과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송부하였음

[별지]

■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O 2012.12. -

성	명	채 동 욱 (蔡 東 旭)
생년월	늴일	1959년 1월 2일생
출 생	지	서울
소	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학	中亚	세종고, 서울대학교
주	요	경 력
○ 1982.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 1984.		수원 제14기 수료
○ 1988. − 1990.		방검찰청 형사2부 검사
	. –	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 1992.		특수법령과 검사
○ 1994.09. − 1996.02.	서울지병	방검찰청 공안2부, 강력부 검사
○ 1996.02. − 1997.02.	서울고등	등검찰청 검사
○ 1997.03. − 1998.02.	창원지병	방검찰청 밀양지청장
○ 1998.03. − 1999.06.	서울지병	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1999.06. − 2000.02.	부산지병	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00.03. − 2000.07.	부산지병	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00.07. − 2001.06.	서울지병	방검찰청 의정부지청 형사5부 부장검사
○ 2001.06. − 2003.03.	대검찰청	청 마약과장
○ 2003.04. − 2004.01.	서울지병	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 2004.02. − 2004.06.	서울중앙	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 2004.06. − 2005.04.	대전지병	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2005.04. − 2006.02.	부산고등	-검찰청 검사
○ 2006.02. − 2007.03.	대검찰청	청 수사기획관
○ 2007.03. − 2008.03.	부산고등	등검찰청 차장검사
○ 2008.03. − 2009.01.	전주지병	방검찰청 검사장
○ 2009.01. − 2009.08.	법무부	법무실 실장
○ 2009.08. − 2011.08.	대전고등	등검찰청 검사장
○ 2011.08. − 2012.12.	대검찰청	청 차장검사

[現]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